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11.23. 이동주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.11.24.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(2017.12.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필레 의원

가. 제안이유

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용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다. 행위의 제한과 원상회복(안 제8조 ~ 안 제9조)
- 라. 큰키나무 관리의 승인·협의(안 제10조)
- 마.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12조 ~ 안 제18조)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이동주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- 본 안건은 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
 -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 정의,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,
 - 제2장에서는 녹화지원 및 녹화사업에 관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화사업을 지원하였고, 녹화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- 제3장은 수목 유지관리 의무 및 행위의 제한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수목의 보존과 녹화추진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- 제4장에서는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기능, 구성, 회의운영, 위원장 직무,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,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 - 본 조례안은 총 4장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돼 있으며,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